당진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공고

2020. 12. 24.

당진시산림조합장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1. 개정이유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96호, 시행일 2020. 9. 25.)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최소 출자계좌 수를 20계좌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정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최소 출자계좌 수를 1계좌에서 20계좌로 상향함(안 제23조제2항)

나.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63조)

다. 해산, 분할, 합병 및 총회 외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라.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안 제64조제1항제8호 삭제)

마.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 및 제65조)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산림조합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지역조합의 사업> 제5조제1항제2호차목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전문조합의 사업>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묘장”을 “양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1좌”를 “1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좌”를 “20계좌”로 “100좌”를 “100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만좌”를 “1만계좌”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1좌”를 “1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1좌”를 “1계좌”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4년으로 하고”를 “다음 각 호와 같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64조제1항제5의2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50좌”를 “50계좌”로, “200좌”를 “200계좌”로 한다.

제65조제5항 중 “보선”을 “보궐선거”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본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합원에게 필요한 ----------.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지역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 략) 2. 경제사업 가. ~ 자. (생 략)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및 판매 카. ~ 하. (생 략) 3.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지역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인공구조물---------- 카. ~ 하. (현행과 같음)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전문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 략)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생 략) 2. ~ 8. (생 략) ② ~ ⑦ (생 략)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 다. ---------- --- 양묘장 ---------- 라.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및 2. (생 략)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및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출자계좌 수 4. 및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제23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1명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	제23조(출자) ① ------- 1계좌 ----------. ② ---------- 20계좌 ----------100계좌 ----------. ③ ---------- 1만계좌 ----------	○ 유사기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출좌 계좌수를 상향함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출자좌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자계좌 수----------.	
제25조(출자증권의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및 2. (생 략) 3.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4. 출자 1좌의 금액 5. 및 6. (생 략)	제25조(출자증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출자계좌 수 4. ------- 1계좌 --------- 5. 및 6.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제26조(회전출자)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78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의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과 총회에서 회전출자외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1좌 이상의 회전출자금은 납입출자금으로 적립한다.	제26조(회전출자) ① ----------. ---------- 출자계좌 수 ----------. ② (현행과 같음) ③ 1계좌 ----------.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제26조의2(우선출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제26조의2(우선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1계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⑥ 본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 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 ⑨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계좌 수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본 조합이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생 략)	제34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 ---------- 1계좌 ---------- ---------- 출자계좌 수 -------- ---------- ---------- ---------- ----------.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제51조(대의원회) ① 본조합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② 및 ③ (생 략)	제51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 해산, 분할, 합병 및 총회 외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함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6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63조(임원의 임기) ① ---------- ---------- 다음 각 호와 같고 ---------- ---------- ----------. <단서 삭제>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기산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산림조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기관처럼 비상임이사 및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보궐선거 시 임기를 새로 기산하도록 함
④ 및 ⑤ (생 략)	④ 및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5. (생 략)	제6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 ---------- ---------- ------ 저지른 ---------- ---------- ---------- ----------	
6. 및 7. (생 략)	6. 및 7. (현행과 같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9. 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 ---------- ---------- ---------- ---------- ---------- ---------- ---------- 저질러 ----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50좌(조합장의 경우에는 200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	11. ---------- ---------- 50계좌---------- -------- 200계좌---------- ---------- ---------- ---------- ----------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및 13. (생 략) ② 및 ③ (생 략)	----------. 12. 및 13. (현행과 같음)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의 해임) ① ~ ④ (생 략) ⑤ 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65조(임원의 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궐선거를 ----------.	○ 조문정리 (법개정사항 반영)
제6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생 략)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이란 산림조합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은 산림조합업무와 관련되는 출장비 및 직무활동비로 하되 직무활동비의 월 지급액은 상임조합장에게 지급하는 평균 월 본봉액 이내와 직책지원비 및 급식비로 한다. ③ (생 략)	제6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는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여비 및 실비변상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세부내용을 다루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